

등록번호	감사관-15321
등록일자	2017. 07. 18.
결재일자	2017. 07. 18.
공개구분	부분공개(5,6)

주무관	행정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7. 7. 18.
협조자		

2017년도 부산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5. 8.(월)~5. 26.(금) ▶ 14일간
※ 사전조사 : 2017. 5. 8.(월)~5. 12.(금) ▶ 4일간
- 대상기관 : 부산시설공단
- 감 사 반 : 행정감사팀장 등 12명
- 감사범위 : 2015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47건 (시정 11, 주의 33, 개선 3)
▷ 본 처 분 : 38건 (시정 9, 주의 26, 개선 3)
▷ 현지처리 : 9건 (시정 2, 주의 7)
- 재정상 조치 : 6건 320백만원(회수 15, 추징 303, 환부 2)
- 신분상 조치 : 90명(기관경고 1, 경징계 3, 훈계 36, 주의 50)
- 수범사례 5건 (표창 5명)

〈직전 감사결과〉 - 감사기간 : 2015. 7. 15. ~ 7. 28. (10일간)

- ▶ 행정상 조치 : 38건 (시정 14, 주의 28)
- ▶ 재정상 조치 : 9건 56,056천원 (회수 33,043, 감액 4,766, 기타 18,247 등)
- ▶ 신분상 조치 : 35명 (훈계 11, 주의 24) ※ 표창 3명

목 차

I . 감사개요 및 결과	1
II . 종합평가	2
III . 주요지적 사례	3
IV .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결과	5
V . 수범사례	7
VI . 조치계획	8

[붙임]

1. 처분요구서 일람표
2. 처분심사내역서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첨)
4.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결과서
5. 수범사례

2017년도 부산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5. 8.(월)~5. 26.(금) ▶14일간
 - ▷ 사전조사 : 2017. 5. 8.(월)~5. 12.(금) ▶4일간
- 대상기관 : 부산시설공단
- 감 사 반 : 행정감사팀장 등 12명
- 감사범위 : 2015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 직전종합감사 실시 : 2015. 5. 26.~6. 5 ▶9일간
- 집중감사 실시분야
 - ▷ 관리시설별 차별화된 특징을 고려한 집중감사 실시
 - 터널·지하차도·관리도로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적정여부
 - 유료도로·공영주차장 등 유료시설의 요금징수 관리체계
 - 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의 운영 및 관리현황
 - 시민회관, 자갈치시장, 한마음스포츠센터 등 집객시설의 안전관리
 - 공원관리 및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한 추진현황
 -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미조치 사례 등

□ 감사결과 (총괄)

- 행정상 조치 : 47건 (시정 11, 주의 33, 개선 3)
 - ▷ 본 처 분 : 38건 (시정 9, 주의 26, 개선 3)
 - ▷ 현지처리 : 9건 (시정 2, 주의 7)
- 재정상 조치 : 6건 320백만원(회수 15, 추징 303, 환부 2)
- 신분상 조치 : 90명 (기관경고 1, 경징계 3, 훈계 36, 주의 50)
- 수범사례
 - ▷ “다양한 최고급 봉안함의 합리적인 가격대 판매” 등 5건 (시장표창 5명)

II

종합평가

- 부산시설공단은 1992년 주차장 관리를 위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1998년 공원·유원지 및 터널 청소업무를 수탁하면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고, 주요 도로·교량, 지하상가, 장사시설 및 문화시설까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를 관리하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 각 시설별로 사업목표가 다르고 운영방식 등의 특징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2014년 부산시민공원, 부산역지하도상가, 송상현광장, 2015년에는 영도연결도로, 신선대 지하차도, 대현지하도상가, 2016년에는 노포동 공영차고지 등 관리시설이 확대됨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을 얻어낸 점 등은 높이 평가 할 만함.
- 그러나 영락공원 공설봉안당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미허가자에 대한 조치소홀, 특수업무수행경비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 광안대교 점검대차 유리관리용역 부적정, 영도대교 하자보수 이행 부적정,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설계용역 등 감독업무 소홀, 공무국외여행 운영 부적정,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하여 간부들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부족과 직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단의 전 임직원이 더욱 업무연찬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발전적이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야 할 것임.

Ⅲ 주요 지적사례

○ 영락공원 공설봉안당 연장사용료 징수 소홀

⇒ 봉안당 사용기간 연장은 15년간 봉안당을 사용한 후 5년씩 최대 3회 연장신청 할 수 있으며, 연장허가 신청시에는 연장사용료 60천원을 징수하여야 하고,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2010. 3월부터 2017. 4월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당 5,465기(제1영락원 2,988기, 제2영락원 2,477기)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사용료 총 302,760천원(제1영락원 177,600천원, 제2영락원 125,160천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안당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302,760천원 추정)

○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부적정

⇒ 「특정업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담당분야(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경영 평가 업무수행 직원)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경영지원실의 전산, 인사, 홍보 및 기술 관련 업무 종사자는 특정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매월 8만원 씩 지급하였음

○ 광안대교 점검대차 유지관리용역 부적정

⇒ '15, '16, '17년 광안대교 점검대차 유지관리 용역결과 센스감지기구 노후로 미작동 등 11개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보수·보강 등의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고, 매년 동일한 점검내용과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고서에 수록하고 있어 용역감독을 소홀한 사실이 있고,
⇒ 또한, 입찰시 용역비 1.5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으로 입찰하여야 함에도 전국으로 제한하였고, 참가자격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만 보유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기계, 전기, 통신 등 3가지의 면허보유와 유지관리 실적까지 참가자격 제한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과도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 영도대교 하자보수 이행 부적정

⇒ 2013.12월 영도대교 준공 이후 정기점검 등 결과 교좌장치 편심발생, 계측시스템 데이터 수집 오류 등 11개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약 9회에 걸쳐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사용계획 미수립과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설계용역 등 감독업무 소홀

⇒ 부산타워 보수·보강 공사를 위하여 ①부산타워 풍동실험 학술용역(110,042천원), ②부산타워 풍하중 보강공사 설계용역(72,550천원)을 일괄 발주 또는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용역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데도 2건으로 분리하여 같은 날(2015. 3.24) 용역을 계약의뢰 하였으며, 풍하중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 210일 중 60일간의 공법검토 업무는 ①차 풍동실험 학술용역 결과에 의하여 ②차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동시에 용역을 수행하다보니 과업기간 60일이 중복되는 등 분리발주로 인한 설계용역이 적절하지 못함.

○ 공무국외여행 운영 부적정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시찰 등은 집행을 억제하라는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집행지침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99명 190,406천원의 비용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순시찰 해외출장 실시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2016년간 한번도 실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그 결과 중요한 항목(인원수 적정, 동일 또는 유사 목적 여행의 통합·단일화, 자료수집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공무국외여행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되지 않아 공무국외여행이 비효율적

으로 운영됨.

⇒ 그 외, 연간운영계획 미수립, 1회 공무여행 인원 과다, 여행목적지 및 기간 부적정, 공무국외일정 무단 변경, 여행시기 부적정, 임원 출장의 경우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미시행, 여행업체 선정 부적정(지방계약법 위반) 등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 시설공단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라 규정된 시간외(연장 및 휴일) 근무를 명하는 경우 과(소)장의 명령을 받아 부(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이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출퇴근 확인 기능이 없이 시스템상 시간외 근무 사전 결재만으로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임. 위탁교육기관중 시스템상 시간외 근무 결재를 받고 수당을 수령한 경우가 다수 있음.

IV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결과

□ 근무

○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감사반 편성 등)

□ 개요

- 참여기간 : 2017. 5. 16.(화) ~ 5. 18.(목) ▶ 3일간
- 전문가 : (주)회덕 토목구조기술사 공영이
- 감사분야 : 시설물 안전관리

□ 참여결과 : 개선(광안대교 관련)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초기점검은 직접 시행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초기점검보고서가 작성되어 관리주체에 이관되고 있어 장래 유지관리를 담당할 관리주체에서 발주하거나, 건설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 초기점검을 발주하는 개선이 필요함.
- 광안대로 계측관련
 - 지속적인 증가가 발생하는 하중작용 지점에 대하여 장기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되므로 명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진단)
 - 반기별로 실시되는 자체 정기점검은 외부전문가(건축 또는 토목)를 동행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보유 인력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여 전문화 한다.
 - 자체 정밀점검은 내실화 될수 있도록 인력충원, 전담부서 배치, 교육 등의 보완과 정밀점검 후 자문회의를 개최.
 - 인력충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이 되도록 하고 정기점검 정도만 자체인력으로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성 확보
 - 계측 실시후 고장이 발견될시에는 계측업체에서 보수를 실시

V

수범사례

☐ 대상전수 : 5건 ▷ 시장표창 추천(5명)

☐ 수범사례 현황 ※ 상세내용 불임5

연번	제 목	수범요지	수범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1	다양한 최고급 봉안함의 합리적인 가격대 판매	1. 공인인증된 최고급 봉안함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대 판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불법 무자료 거래 및 고가구입에 따른 유족 불만 개선 3. 봉안함 가격공시 및 전시에 따른 부당한 고가 봉안함 구매 근절	○○○	○○	○○○
2	공원내 무단경작지 집중단속 및 원상복구 실시	수년간 방치된 무단경작지 원 상복구 실시로 미관 저해요인 개선 및 무단경작지 단속과 수목 식재로 건전한 도시공원 의 산림기능 회복	○○○	○○	○○○
3	입찰서류 위·변조 부정업체 적발 및 계약서류 간소화 서비스 추진	입찰 이후 적격심사 중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격취득일 위·변조 적발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 제한 조치와 준공, 대금 청구시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발급으로 고객불편(비용, 시간 등)해소	○○○	○○	○○○
4	공단 시설물 체계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	공단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위탁 대행하는 사업장을 자체 유자격자 선임하여 40백만원 예산절감 도모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여	○○○	○○	○○○
5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정상화 및 안정적 운영관리	화장시설의 오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방점검과 정비로 최상의 화장로를 유지관리 하 였고, 친환경 고효율 화장로 정상화 및 안정적 관리로 전국 최고 화장률 기여	○○○	○○	○○○

VI 조치 계획

□ 행정상 조치

○ 감사에 지적된 47건에 대하여는

- ▷ 본처분 38건 중 시정이 가능한 건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향후 유사·반복 지적 사례 적발시는 가중 처벌할 예정임
- ▷ 내용이 경미한 9건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의 현지처리)에 따라 현지 조치 ※ 기 완료

○ 수범사례 5건에 대하여는

- ▷ 표창(시장) 및 전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조치

□ 재정상 조치

○ 6건 320백만원에 대하여는 회수 등 조치

- ▷ 회수 4건 15백만원, 추징 1건 303백만원, 환부 1건 2백만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대상자 90명(기관경고 1, 경징계 3, 훈계 36, 주의 50)은 문책 조치
- 수범직원 5명에 대해서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시장표창 추천